

#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영순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263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6. 13.

발의자 : 박영순 · 박정 · 이장섭  
윤영덕 · 안민석 · 김교홍  
최인호 · 조승래 · 임호선  
조정식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원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하여 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일부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지원센터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나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, 지정이 취소된 기관의 경우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원센터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6조제4항 및 제5항 신설).



##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4항) 중 “운영”을 “운영, 지정취소”로 한다.

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

-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경우
-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
⑤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지원센터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받을 수 없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# 신 · 구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의 설치) ① ~ ③ (생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④ 지원센터의 설치 · 지정기준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	<p>제6조(중소기업사업전환지원센터의 설치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경우</u></p> <p><u>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</u></p> <p><u>⑤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지원센터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받을 수 없다.</u></p> <p><u>⑥ ----- -- 운영, 지정취소 ----- -----.</u></p>